

프랑스의 고위험 직종 노동계좌 시행의 의미와 논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프랑스

김상배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노동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통상 ‘고위험 계좌’라고 불리는 ‘고위험 직종 노동계좌’¹⁾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위험성이 높은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 및 매우 이른 나이에 직업활동을 시작한 근로자들에게 조기 정년퇴직 등 다양한 예방책을 제공하고자, 이들의 직업 경력을 누적하는 제도이다. 201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개혁법에 포함된 이 제도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내용이 큰 틀에서 정해지긴 했지만, 업종별 평가방식 등 정해야 할 규칙이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간의 입장차 역시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사회대토론회(노사정회담)가 파행적으로 진행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고위험 직종 노동계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해당 제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시행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김상배(2013), 「프랑스 사회계좌 제도와 보편적 사회계좌 보고서」, 『국제노동브리프』 11(10), 한국노동연구원, pp.84~92 참조. 원어인 Compte personnel de prévention de la pénibilité를 직역할 경우 ‘위험성 예방 개인 계좌’이며, 당시 원고에서는 ‘고위험 직종 개인 계좌’라는 단어로 의역하였다. 하지만 Compte pénibilité 라는 말로 통용되며, 계좌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 개인적이라는 점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고위험 직종 노동계좌’로 번역, 사용하기로 한다.

■ 고위험 노동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변천사

노동에 있어서 고통도 혹은 난이도(Pénibilité)라는 개념은 법적인 측면에서 2003년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주로 정년퇴직 관련 법과 함께 논의되었다. 2003년 정년 개혁법²⁾ 60조는 “근로자가 처한 위험 조건과 노출 기간, 그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사용자가 기록 및 수립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동시에 “3년 이내에 노사가 전직종 단체교섭을 통해, 고위험 직종에 대한 정의와 사용자들의 의무사항에 대해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이 문제와 관련된 교섭은 실패로 끝났지만, 노사는 열 가지에 해당하는 노동조건을 고위험 직종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표 1 참조). 이어 2010년 11월 통과된 정년 개혁법³⁾은 처음으로 ‘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도입하였다. “위험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장부를 마련하여 노출 빈도 및 기간 등을 기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실천 계획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체협약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늦어도 3년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공표된 「직업적 위험 요소 규정 관련 시행령」⁴⁾은 위험도가 높은 노동환경을 열 가지로 정했다. 이는 2008년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진 것과 같다(표 1 참조). 결국 2003년 이래 10년이 넘게 끌어 온 고위험 직종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다. 구체적인 제도가 부재했으며, 고위험 노동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건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1월 채택된 「정년퇴직 제도의 존속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⁵⁾은 제목에서 보여주듯 크게 두 가지 제도변화를 담고 있다. 우선, 온전한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충족시켜야 할 노동기간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즉 퇴직 연령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정년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담고 있다. 젊은이들의 시간제 노동, 견습생, 연수(인턴) 기간을 정식 노동기간으로 포함시키는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

2) Loi n° 2003-775 du 21 août 2003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

3) La loi n° 2010-1330 du 9 novembre 2010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

4) Décret n° 2011-354 du 30 mars 2011 relatif à la définition des facteurs de risques professionnels.

5) LOI n° 2014-40 du 20 janvier 2014 garantissant l'avenir et la justice du système de retraites.

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대책이 바로 ‘고위험 직종 노동계좌’를 2015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하는 것이다. 보편적 사회계좌와는 별도로, 특수한(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로 경력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여 예방 대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 주요 내용

이 법안이 최종 채택되기 전인 2013년 11월 정부 부처 중 노동부와 보건부는 르노그룹의 전 인사관리책임자였던 미셸 드 비르빌(Michel de Virville)에게 ‘고위험 직종 노동계좌’ 제도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을 위한 보고서 작성 임무를 부여했다. 그리고 2014년 6월 이 보고서의 최종안이 정부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이 보고서의 제안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정부 시행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보다 단순하고 용이한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노사 양측에 이를 전달했다. 따라서 노사는 전직종 단체교섭 및 업종별 교섭을 통해 세부적인 방식을 정해야 한다.

고위험 직종(Pénibilité)은 2008년 노사 합의를 통해 열 가지로 정의되었고, 2011년 노동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표 1>의 열 가지 노동환경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건에서 노동하는 자는 자신의 계좌에 분기마다 1점을 적립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점수는 두 배가 된다. 즉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에 최대 8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평생 적립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 100점이다.

2014년 6월 보건부와 노동부가 공식 발표한 보도 자료⁶⁾에 의하면,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해당 계좌를 통해 적립한 점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6) «Présentation du Compte Personnel de Prévention de la Pénibilité», Dossier de presse, 2014. 6.

〈표 1〉 고위험 노동환경의 종류와 기준치

종류	기준치
무거운 물건의 수동적 운반 작업	15kg(들어올릴 경우) / 120kg(밀거나 끌 경우) - 연 600시간 이상 1일 7.5톤 이상 운반 - 연 120일 이상
고된(불편한) 작업 자세	웅크림, 무릎 꿇음, 상반신의 30도 이상 뒤틀림, 45도 이상 허리 굽힘 - 연 900시간 이상
기계 진동	팔, 어깨의 경우 진동 가속도 2.5 m/s ² 이상, 몸 전체의 경우 0.5 m/s ² 이상 ¹⁾ - 연 450시간 이상
고위험 화학물질 (먼지, 연기 포함)	'발암, 돌연변이, 유독성 물질(CMR)'이나 위험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노동이 해당되며, 기준치는 위험평가에 의해 정해짐.
고압환경에서 작업	1,200헥토파스칼(hPa) 이상의 환경에서 연간 60회 이상 노동
극한 온도(고온 및 저온)	5도 이하,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연 900시간 이상
소음	80데시벨(A 가중), 130데시벨(C 가중) 이상, 연 600시간 이상
야간 노동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최소 1시간 이상 노동, 연 120일 이상
연속 교대 방식의 팀 노동	야간 교대 근무만 해당되지만, 팀별 노동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비정형적인 야간 노동도 포함, 연간 50일 이상. 위 '야간 노동'과 중복 불가
반복 노동	1분 이하의 주기로 반복되는 노동, 1분 이상일 경우라 할지라도 분당 평균 30가지 행동을 할 경우 해당, 연 900시간 이상

주 : 1) 진동 가속도 단위를 통해 진동의 크기를 헤아리기 힘들지만, 한 연구 자료(최은주, 2008)에 따르면, 승용차로 아스팔트 위를 시속 60km로 달릴 경우 탑승자가 몸으로 느끼는 진동의 크기는 0.3m/s² 정도이며, 휴대전화의 진동은 5m/s² 이하라고 함.

자료 : 종류의 경우 노동법전 L. 4121-3-1에 명시된 것이며, 기준치의 경우 미셸 드 비르빌(Michel de Virville)의 보고서에 담긴 제안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 ① 위험 노출이 없거나 적은 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이수 가능
- ② 위험 노출 시간의 감소와 휴식기를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 가능(시간제 근무로 전환 가능)
- ③ 최대 2년(8사분기)까지 정년 연령 단축 가능

먼저, 10점이 적립될 경우, 1사분기의 기간만큼 직업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1점당 25시간의 교육이 가능하다. 첫 20점은 직업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하므로, 점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 50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 개인 계좌(Compte Personnel de Formation)를 통해 보

장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 시간 150시간을 합하면,⁷⁾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650시간까지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삭감 없이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누적된 점수를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쓰고자 할 경우, 10점을 사용하여 1사분기, 즉 3개월 동안 임금 손실 없이 반일 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8사분기, 즉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10점을 사용하여 정년을 1사분기 앞당길 수 있다. 이 역시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55세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직업교육의 경우 점수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조기 정년 같은 경우 10점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명시된 노동환경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작업을 할 경우,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계절직, 간접고용, 보조계약 등) 모두 점수를 적립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주가 변경되더라도 이 같은 직업활동 경력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예를 들어, 야간 노동의 경우 연간 120일 이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3개월 단기 계약직의 경우 30일 이상 야간 노동을 할 경우 1점을 획득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위와 같은 조건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수는 민간부문 기준 20% 정도이며, 시행 초기에는 연 5억 유로(2020년까지), 2040년경에는 연간 25억 유로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사회적 부담금을 통해 충당된다. 먼저 전체 기업은 2017년부터 임금총액의 0.01%를 해당 제도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1인 이상이 고위험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임금총액의 0.1%(2015년과 2016년) 또는 0.2% (2017년부터)를 특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위험 요소가 2개 이상일 경우 두 배 적용).

7) 김상배(2013), 「프랑스 사회계좌 제도와 보편적 사회계좌 보고서」, 『국제노동브리프』 11(10), 한국노동연구원, pp.84~92 참조. 당시 보고서는 근로자가 적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 시간이 총 120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통과되어 201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직업교육 개인계좌에 관한 법률(LOI n° 2014-288 du 5 mars 2014 relative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à l'emploi et à la démocratie sociale)'은 이 시간을 150시간으로 늘렸다. 즉 2014년까지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직업교육에 관한 개인의 권리(DIF)'라는 형태로 연간 20시간, 최대 6년까지 직업교육을 위한 시간(120시간)을 적립할 수 있으나, 2015년부터 '직업교육 개인 계좌'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연 24시간(총 120시간)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후부터 7년차까지 연 12시간씩 적립되며, 총 시간은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논란과 쟁점

6월 드 비르빌(De Virville)의 제안서 발표 이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사용자 측은, 7월 7일과 8일에 걸쳐 개최된 사회대토론회(노사정회담)를 앞두고 회담 참가 거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이 제도의 시행이 사용자에게는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무총리는 부분적 유예(부분적 시행)를 약속하면서 사용자 단체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이는 노동조합 측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그 결과 5대 노총에 속하는 CGT와 FO를 비롯해 총 4개 노동조합은 토론회의 둘째 날 일정에 전면 불참하여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논란의 불씨인 부분적인 유예란, 고위험 노동환경 중 네 가지 종류(질은 음영 부분)만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여섯 가지 노동환경은 2016년 1월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표 1 참조). 이는 노사간의 입장차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사회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내 ‘노동 위험성, 건강 및 직업병 연구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라르 세바운(G rard Sebaoun) 의원은 일간지 르몽드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32명의 동료 의원들이 그의 입장에 동조했다.⁸⁾ 그는 칼럼에서 현재 프랑스에서 육체 노동자와 중간 관리자의 기대(평균)수명 차이가 7년이라며, 노동조건이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면적인 시행이 보류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분담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2014년 5월, 기업 분담금을 2017년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험 직종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 분담금은 임금총액의 0.0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특별 분담금 역시 관련 근로자의 2015년 임금분에 상응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2016년부터 부과된다. 즉 2015년과 2016년 임금총액에 대해서는 0.1%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2017년 이후부터는 임금총액의 0.2%를 특별 분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6개의 직종이 연기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8) Le Monde(2014. 7. 10), «Le compte p nibilit , une avanc e   prot ger».

■ 맺음말

고위험 직종 노동계좌는 현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개인계좌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정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험 직종 종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노동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조기 퇴직을 제외하면, 온전한 퇴직 연금 자격을 갖추면서 조기 퇴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10년이 넘게 논의되어 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노동환경에 대한 평가 방식의 복잡성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전반적인 작업장 환경을 평가하고, 근로자 각자의 노동조건을 기록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도 적지 않다. 책임감 협약 등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부담금이 큰 폭으로 감면된 것을 감안하면, 이 노동계좌로 인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사용자에게 ‘부분적 유예’라는 선물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이후 노동조합의 불만은 크게 높아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제도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 직종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업종별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KLI**

참고문헌

- 김상배(2013), 「프랑스 사회계좌 제도와 보편적 사회계좌 보고서」, 『국제노동브리프』 11(10), 한국노동연구원, pp.84~92.
- 최은주(2008), 「‘진동’에 대한 즐겁고 새로운 상상」, *Techno Leaders' Digest 19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p.6~7.
- 노동부&보건부(2014. 6), «Présentation du Compte Personnel de Prévention de la Pénibilité», Dossier de presse.
- Michel de Virville(2014), «Concertation relative à la mise en place du compte personnel de prévention de la pénibilité».
- Le Monde(2014. 7. 10), «Le compte pénibilité, une avancée à protéger».